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민소송법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4 년 10월 29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723-5052 (담당: 신원기 간사 010-9909-6054)

소 개 의 원 : 김현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성명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명	국민소송법 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4. 10. 29.
소개의견 현재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복지문제와 연결되어 사회적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증가 원인과 관련되어 선심성 정책 또는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낭비 방지나 낭비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노력은 부족합니다.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은 위와 같은 예산낭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여, 참여민주주의·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권한의 확보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관련하여 투명예산, 책임예산, 참여예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과 관련된 정부내부의 통제·감시장치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책임예산에 있어 사후적, 외부적 예산 감독통제장치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예산낭비 사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과 관련된 납세의 의무자로서 국민의 지위를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권리자로 격상시켜 국가 등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소송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 개 의 원

김 현 미

인

국민소송법 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4. 10. 29.

제안자 : 참여연대

소개의원 : 김 현 미

1. 제안이유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복지문제와 연결되어 사회적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부채의 증가 원인과 관련되어 선심성 정책 또는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낭비 방지나 낭비된 예산의 환수에 관한 노력은 부족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소송법의 제정을 요구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국가등의 재무행위와 관련된 부당 및 위법에 관하여 국민들이 위반행위자들을 상대로 직접 위법부당행위 중지청구소송등과 위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요지임.

주요 내용은 <원고>, <피고>, <중지청구등 소송과 손해배상소송>, <중지청구등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한 감사전치주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소기간의 제한>, <국민대표소송제의 활성화를 위한 보상제도와 공익제보자 대우> 등임.

국민소송법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권리 등) ① 국민은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 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로부터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공금지출, 채권·채무현황, 재산관리현황, 그 밖의 재무관련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기관 등"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행정기관,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재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1.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4. 공채의 발행, 공적 채무의 인수
5. 국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
6. 국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비과세, 면세, 감세 및 환급조치

제4조(국민소송의 종류) 국민소송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중지청구등소송 :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손해배상청구등소송 : 국가기관 등을 대위하여 위법한 재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법률관계부존재확인, 원상회복,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위법한 재정행위와 관련 있는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제5조(중지청구등소송) : 중지청구등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법·부당행위 중지청구소송 : 재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여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는 소송

2. 위법·부당처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소송: 재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한 경우 재정행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3. 해태사실 위법·부당확인 소송: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한 경우 그 위법이나 부당을 확인하는 소송

제6조(준용규정) 국민소송의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중지청구등소송

제1절 소의 제기

제7조(관할 등) ① 중지청구등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하고 대법원을 제2심법원으로 하여 2심제로 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8조(원고적격) 19세 이상의 국민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

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누구든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관하여 중지청구등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9조(피고적격) 중지청구등소송은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한 국가기관 등을 피고로 한다.

제10조(소송의 대상) 중지청구등소송의 대상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감사청구전치주의) ① 중지청구등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공금의 부과·징수 등을 게을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소를 제기 하기전에 국민소송감사위원회에 국민소송을 위한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②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국민소송감사위원회) ① 중지청구등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총리 소속으로 국민소송감사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무총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존부 또는 이행의무해태의 존부

2. 감사결과 해당 국가기관 등에게 요구할 적절한 조치의 내용

3. 그 밖에 국무총리가 국민소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심사청구인, 국민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 기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관련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회의 참석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⑨ 위원장은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국민소송감사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민소송감사위원회의 조치 등)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국가기관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국가기관 등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해당 국가기관 등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의 제기) ① 제11조에 따라 감사청구한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중지 청구등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다만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위원회의 감사결과나 조치요구에 불복할 경우
3. 해당 국가기관 등이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19세 이상의 국민은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대·긴급한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해당 국가기관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중지청구등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제소기간) ① 중지청구등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다만 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끝난 날)
2.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지한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위원회가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② 다만 제소기간 내 제소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경과 후에도 제소할 수 있다.

제16조(중복제소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다른 국민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때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절 재판

제18조(소송의 공고) ① 법원은 중지청구등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 제기 사실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방법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중지청구등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국가기관 등이 있는 경우 문서로 국가기관 등에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소송참가)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지청구등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사소송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소송참가의 경우에 준용한

다.

제20조(소송중단등) ① 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국민에게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의 게시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19세 이상의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제21조(증거보전조치) 법원은 증거의 소멸 우려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제기 전에 증거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결정) ① 법원은 중지청구소송 제기 후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원고의 자료제출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이나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소송자료로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이나 관계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법원과 원고에게 공개되는 소송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자료제출거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이나 관계행정청의 자료제출거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 또는 관계행정청에게 그 자료를 법원에 한해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원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자료제출거부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이 때 가분하여 일부 인용할 수 있다.

제23조(입증책임의 전환) 법원은 국가기관 등 또는 관계행정청이 자료제출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의 존부에 대해 원고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24조(사정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지판결등의 효력) 재정행위의 중지, 무효등 확인, 취소, 위법·부당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6조(중지판결등의 기속력) 재정행위의 중지, 무효등 확인, 취소, 위법·부당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국가기관 등을 기속한다.

제27조(원고의 처분권 제한)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없다.

제28조 (재심의 소) 이 법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모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 및 다른 국민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손해배상청구등소송

제29조(관할) 손해배상청구등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0조(피고적격) 손해배상청구등소송은 위법한 재정행위와 관련 있는 자를 피고로 한다.

제32조(민법 제766조의 특례) ①위법한 재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위법한 재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준용규정) 제7조 제2항, 제8조, 제15조 제2항, 제16조 내지 제23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등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배상과 보상금의 지급

제34조(손해배상 책임) 피고는 이 법에 의한 소송결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35조(보상금의 지급) ① 이 법에 의한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은 100억 한도 내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정한다.

1. 최초의 소 제기, 승소 기여도 등 원고 소송수행형태
2. 공익제보의 독자성 및 중요성
3. 해당 소송이 국민이익에 기여한 정도
4. 공익제보로 인한 공익제보자의 피해

③ 수인의 원고 및 공익제보자 사이의 보상금의 배분,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상환)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그 밖의 소송의 준비, 제기, 수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 승소 시에는 비율에 따른다.

제37조(구상권의 제한) 이 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관련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공익제보자의 보호

제38조(공익신고) ① 누구든지 국민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국가재정 침해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시민단체
6. 언론사
7. 그 밖에 국회의원 등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시민단체나 언론사가 공익신고를 받은 경우 시민단체나 언론사는 추후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신고사실에 대한 자료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공익제보자 등) ①이 법에 정한 국민소송에 대한 공익제보자는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정한 공익제보자로 본다.

② 이 법의 국민소송 제기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로 본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석태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경기고양시 일산서구	